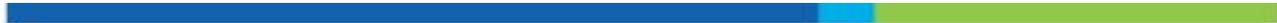




**2022년 기준 문화재산업조사**  
**- 통계용어 정의 -**



**문화재청**

## 1. 문화재산업 정의

- 문화재산업이란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기획, 제작, 관리, 유통, 연구, 교육 등과 같은 산업을 말함

## 2. 문화재 현황 용어

- 지정문화재

구 분	내 용
지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해서 보호되는 문화재</li> <li>●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재 등)와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로 구분</li> </ul>

- 국가지정문화재

구 분	내 용
국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것</li> </ul>
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중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한 것</li> </ul>
사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유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li> </ul>
명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li> </ul>
천연기념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li> </ul>
국가무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여러 시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적 공연·예술/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 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li> </ul>
국가민속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중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 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li> </ul>

○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구 분	내 용
국가	● 국가기관, 국립박물관, 국립대학, 공유수면 등의 국가 소유 문화재 수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공립학교 등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문화재 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특정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 및 기관 등의 소유 문화재 수
법인·단체	● 사찰, 서원, 향교, 문중, 사립미술관, 사립박물관, 사립대학, 일반법인,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법인·단체 소유 문화재수
개인	● 개인 소유 문화재 수
해당없음	● 천연기념물(동물)과 같이 해당사항이 없는 문화재 수
혼합	● 소유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문화재 수

○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주체

구 분	내 용
국가	● 국가기관, 국립박물관, 국립대학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수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공립학교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문화재 수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특정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 및 기관 등이 관리하는 문화재 수
법인·단체	● 사찰, 서원, 향교, 문중, 사립미술관, 사립박물관, 사립대학, 일반법인,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 법인·단체가 관리하는 문화재수
개인	● 개인이 관리하는 문화재 수
해당없음	● 천연기념물(동물)과 같이 서식지가 광범위하여 관리단체 지정이 되기 어려운 종목 등 해당사항이 없는 문화재 수
혼합	● 관리주체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문화재 수

○ 재질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구 분	내 용
석조	● 돌로 만든 물건이나 건조물
목조	● 나무로 만든 물건이나 건조물
금속	● 불상, 귀금속, 식기, 생활 용구, 활자 등 주로 공예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필요에 따라 제작되어 형태가 매우 다양
도자	● 도기와 자기를 일컫지만, 여기에서는 토기까지 포함 ● 토기는 흙을 빚어 형태를 만드는 데 그침 ● 도기와 자기는 흙, 모래 등을 이용해 빚은 그릇 등을 불에 구워 미감과 효용성을 높인 기술의 집약체
종이	● 식물성 섬유를 이용해 만든 얇은 물건 ● 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인쇄할 때 사용
기타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중 석조, 목조, 금속, 도자, 종이 외에 섬유, 피혁 등 기타 재료나 한 가지 재료로 규정이 불가능한 성곽 등의 건조물을 합쳐 기타로 구분

○ 시·도지정문화재

구 분	내 용
시도유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li> <li>● 보존 가치가 인정될만한 것을 각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li> </ul>
시도무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 여러 시대의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전통적 공연, 예술/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한의학, 농경,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li> </ul>
시도기념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사적, 명승,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것 중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큰 것</li> </ul>
시도민속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중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 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li> </ul>

○ 문화재자료

구 분	내 용
문화재자료	●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국가등록문화재

구 분	내 용
국가등록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li> </ul>

○ 시·도등록문화재

구 분	내 용
시·도등록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li> <li>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li> </ul>

○ 비지정문화재

구 분	내 용
비지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문화재</li> <li>문화재 보호 및 고분 등 유적지 등</li> <li>매장문화재, 일반동산문화재 등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향토 유적·유물)로 구분</li> </ul>

○ 세계기록유산

구 분	내 용
세계기록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인데도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유산을 보존·이용하기 위하여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강구하고자 유네스코에서 1995년에 시작한 사업</li> <li>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로, 파피루스·양피지·야자 잎·나무껍질·섬유·돌 등에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 필사본·도서·신문·그림·지도·오디오·비디오 등 단독 기록 또는 기록의 모음(archival fonds) 등이 등재 대상</li> </ul>
등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향력, 시간, 장소, 인물, 주제, 형태, 사회적 가치, 보존 상태, 희귀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li> </ul>

○ 인류무형문화유산

구 분	내 용
인류무형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아있는 전통문화로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li> <li>●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li> </ul>
등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은 '소멸위험', '긴급 상황', '공동체·집단·개인이 실연 가능하도록 보호조치 구비' 등 6가지 기준으로 평가</li> <li>●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은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 간 대화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li> </ul>

○ 국외소재문화재

구 분	내 용
국외소재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 외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li> <li>● 대부분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역사적·사회적 혼란기에 다양한 경로로 국외로 반출됨</li> </ul>

○ 고도지구

구 분	내 용
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li> <li>●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밖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li> </ul>
고도지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각 고도의 핵심지역 중 일부를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로 지정</li> <li>●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li> <li>●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li> </ul>

○ 석조문화재

구 분	내 용
전탑(搏塔)	● 전벽돌로 쌓은 탑, 벽돌을 쌓은 탑
모전석탑(模搏石塔)	●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은 탑
석불(石佛)	● 돌로 만든 불상
석비(石扉)	● 돌방 무덤 안에서 널방으로 들어가는 어귀에 세운 문
승탑(僧塔)	●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탑으로 부도(浮屠)라고도 함
마애불(磨崖佛)	● 자연 암석에 부조 또는 선각 등으로 새겨진 불상
당간지주(幢竿支柱)	● 절 입구에 세워 깃대를 지탱하는 데 사용하는 돌기둥
석등(石燈)	● 절 마당이나 무덤 앞에 돌로 만들어 야간 조명이나 장식용으로 세운 돌
석교(石橋)	● 작은 개울을 건너기 위하여 돌로 만든 다리
귀부(龜趺) 및 이수(螭首)	● 귀부는 거북 모양의 비석 받침 ● 이수는 용의 모양을 새겨 장식한 비석의 머릿돌
석빙고(石氷庫)	● 신라 때부터 얼음을 넣어 두던 창고
석조(石槽)	● 큰 돌을 넓게 파서 물을 받아 사용하도록 만든 물통의 일종
대좌(臺座)	● 불상을 안치하는 대(臺)
암각화(巖刻畫)	● 바위 면에 칠하기, 새기기, 쪼기 등의 수법으로 그린 그림. 구석기시대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
각석(刻石)	● 비문이나 도상을 새긴 돌
석주(石柱)	● 돌로 만들어 세운 기둥
풍기대(風旗臺)	● 풍기대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관측하기 위해 설치한 받침돌로 깃발(風旗)을 꽂아둠
석표(石標)	● 경계, 풍수, 방액 등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돌
수표(水標)	● 하천의 수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측량기구
석종(石鐘)	● 종 모양으로 새겨 만든 부도
석연지(石蓮池)	● 큰 돌을 우묵하게 파서 연꽃을 심어 감상하거나 물을 담는 항아리 모양으로 만든 것
석연대(石蓮臺)	● 돌로 만든 연화대(연꽃을 새긴 대좌)
첨성대(瞻星臺)	● 별을 관측하기 위해 높이 쌓은 대
노주(露柱)	● 벽면에 붙어 있지 않고, 사방이 노출되어 있는 둥근 기둥
석조불감(佛龕)	● 불상을 모셔 두는 방이나 집, 이동 시 불공을 드리기 위해 제작한 휴대용 법당
석사자(石獅子)	● 돌로 만든 사자. 탑 모퉁이에 설치하여 탑을 지킨다고 함.
천인상(天人像)	● 하늘나라에 산다는 천인을 조각하는 상
석축(石築)	●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을 쌓아 올린 벽
관천대(觀天臺)	● 간의를 설치한 조선시대 천문관측시설로 ● 간의대(簡儀臺)라고도 함
자격루(自擊漏)	● 세종이 왕명으로 제작한 자동으로 시보를 알려주는 장치가 되어 있는 물시계
태실	● 왕실에서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胎)를 봉안하는 곳을 지칭

○ 목조문화재

구 분	내 용
사찰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찰은 불상을 봉안하고 수행자인 스님들이 머무는 곳이며 불교 신자들의 수행과 전법의 중심이 되는 곳</li> </ul>
궁궐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궐건축의 특징은 뒤로는 산이 감싸고,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배산임수, 궁궐을 바라보며 왼쪽에는 사직단, 오른쪽에는 종묘가 있는 좌묘우사를 지킴</li> <li>● 왕실의 존엄성과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대규모로 화려하게 건축</li> </ul>
성곽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의 성곽(城郭)은 일반적으로 관청을 포함한 시가지 전체가 긴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음</li> </ul>
관아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의 지방행정기구의 청사가 위치한 마을</li> <li>● 읍치라고도 불림</li> </ul>
향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있었던 국립 지방 교육기관</li> </ul>
고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옛 사람들이 생활하던 오래된 집</li> </ul>
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에서 일종의 학교</li> <li>● 조선 중기 이후 설립된 사설 교육 기관이며, 유교의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li> </ul>
누·정·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 : 주로 휴식이나 유희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2층 구조</li> <li>● 정 : 누와 목적이나 용도는 비슷하지만 2층이 아닌 단층 구조</li> <li>● 각 : 독립적인 목적으로 세워지지는 않았고 주로 전이나 당의 부속</li> </ul>
사묘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당, 묘 등의 주변에 제사지낼 때 쓰이는 집</li> </ul>

○ 건조물문화재

구 분	내 용
건조물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정의와 같이 유형문화재 중 전적, 서적 등 동산문화재를 제외한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li> </ul>

○ 동산문화재

구 분	내 용
동산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의거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문화재를 제외한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li> </ul>

○ 천연기념물

구 분	내 용
노거수	● 나무의 수령이 오래된 당산목·풍치목·정자목 등의 나무
수림지	● 그 자체로 식생이 유지되는 숲 ● 특수한 지역에 발달하는 식물의 군락이나 희귀한 종류, 특수한 습성을 가진 식물의 군락을 보존하고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숲
마을숲	● 한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마을 주변에 조성되어 관리되어 온 숲 ● 당숲·성황림·서낭숲처럼 토착 신앙 또는 풍수지리설을 배경으로 조성
자생지	● 특정 식물이 한정된 장소에 자랄 수 있는 일정한 장소 ● 생육하는 식물 중 자체보다 환경적 요인이 중요시되는 지역의 식물군락
분포한계지	● 식물별로 정해진 분포범위 중 그 한계선 상에 생육하고 있는 개체나 군락
도래지	● 철새 따위가 다른 곳에서부터 들어와 머무는 곳으로 자연환경
암석	● 광물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자연산 고체
광물	● 일정한 화학조성과 매우 규칙적인 원자 배열을 가진 균질한 고체 ● 대부분 무기적인 과정에 의하여 생성되며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지형지질일반	● 지형 : 그 지역의 지질이 오랜 세월을 걸쳐 지각변동과 풍화작용을 받으면 서 하천·바다·바람·빙하·지하수·호소 등과 같은 영력(營力)에 의하여 침식→운반→퇴적작용을 받은 결과로 지표면에 나타나있는 형태 ● 지질 : 지구의 껍질에 해당하는 암권의 근본이 되는 물질의 성질·상태·종류·구조 등
천연동굴	● 자연적으로 생긴 깊고 넓은 큰 굴
천연보호구역	● 식물상·동물상·지질학적 또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기념물의 중요성을 인정 ● 보존 관리와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한 보호 지역

○ 명승

구 분	내 용
명승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중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 분	내 용
보유자	●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
전승교육사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이수자	●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
보유단체	● 무형문화재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
명예보유자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중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사람
전수장학생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 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사람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범주

구 분	내 용
전통공연·예술	●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공연·예술 등
전통기술	● 공예, 건축, 미술
전통생활관습	● 절기풍속,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생활관습
의례·의식	●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의식·의례
전통놀이·무예	● 놀이, 축제, 기예, 무예
전통지식	● 한의학, 농경, 어로
구전전통 및 표현	● 언어표현, 구비전승 등

### 3. 문화재 보존·관리 용어

#### ○ 문화재 긴급 보수

구 분	내 용
문화재 긴급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문화재에 대해 천재지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시행하는 절차</li> </ul>

#### ○ 문화재 수리

구 분	내 용
문화재 수리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문화재 수리에 관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 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li> <li>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실측 설계 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 기술자로 구분</li> </ul>
문화재 수리기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 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li> <li>한식목공, 드잡이공, 번와공, 철물공, 도금공, 조경공 등 20개로 구분</li> </ul>
문화재수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업으로 하는 것</li> <li>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전문문화재수리업(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온돌공사업), 문화재 실측설계업, 문화재 감리업으로 구분</li> </ul>

#### ○ 문화재수리기술자

구 분	내 용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와 이와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단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청분야[불화(佛畵) 포함]의 시공 및 감리와 이와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실측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와 이와 관련된 고증·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li> </ul>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와 이와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보존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와 이와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식물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와 이와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 문화재수리기능자

구 분	내 용
한식목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조 건조물의 해체·조립 및 치목(治木)과 그에 따른 업무</li> <li>● 목조 건조물의 창호·닫집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의 제작·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li> </ul>
한식석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재의모 가공,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li> <li>● 석조물의 축조·해체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li> </ul>
화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청(불화 포함)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드잡이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수리업에서 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해 바로잡는 일을 하거나 그에 따른 업무 수행하는 사람</li> </ul>
번와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와를 덮는 장인</li> </ul>
제작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와·전(塼) 등의 제작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한식미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를 시공하는 장인</li> <li>● 미장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해 한식벽체, 양벽, 온돌, 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장인</li> </ul>
철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물 등의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li> </ul>
조각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 및 석재를 이용한 조각, 목조·석조각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li> </ul>
칠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옷 등의 전통 재료를 이용한 칠, 칠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li> </ul>
도금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금, 도금과 관련된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li> </ul>
표구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구, 표구물의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li> </ul>
조경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의 시공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세척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척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보존과학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증공(재료나 자재의 살균·살충·방부 등을 위한 훈증과 그에 따른 업무) 및 보존처리공(보존처리와 그에 따른 업무)</li> </ul>
식물보호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실측설계사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측 및 설계도서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박제 및 표본 제작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제·표본 제작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li> </ul>
모사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중장식화, 풍속화, 초상화, 기록화, 산수화, 불화 등의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 모사하는 장인</li> <li>● 현상모사, 복원모사로 구분</li> </ul>
온돌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돌의 해체·설치 및 보수와 그에 따른 업무</li> </ul>

○ 문화재수리업

구 분	내 용
보수단청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토목공사 및 단청(불화 포함)의 시공</li> <li>●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조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경공사의 시공</li> <li>●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보존과학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처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시공</li> <li>●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식물보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및 환경 개선의 시공</li> <li>●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단청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청(불화 포함)의 시공</li> <li>● 가목과 관련된 고증·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li> </ul>
목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공사의 시공</li> </ul>
석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공사의 시공</li> </ul>
변와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와공사(기와를 해체하거나 이는 일)의 시공</li> </ul>
미장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장공사의 시공</li> </ul>
온돌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돌공사의 시공</li> </ul>

○ 문화재실측설계업

구 분	내 용
문화재실측설계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를 실측하거나 고증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일을 하는 업체</li> </ul>

○ 문화재감리업

구 분	내 용
문화재감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li> </ul>

○ 중요목조문화재

구 분	내 용
중요목조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조물 중 목재로 제작된 문화재 중, 국가지정 목조문화재</li> <li>● 사찰, 궁궐, 성곽, 향교, 누정·각, 사묘재실 등</li> </ul>

○ 천연기념물

구 분	내 용
번식지	● 철새 따위가 등지를 틀고 새끼를 기르는 장소
수림지	● 그 자체로 식생이 유지되는 숲으로 특수한 지역에 발달하는 식물의 군락이나 희귀한 종류, 특수한 습성을 가진 식물의 군락을 보존하고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숲
자생지	● 특정식물이 한정된 장소에 자랄 수 있는 일정한 장소로 생육하는 식물 중 자체보다 환경적 요인이 중요시되는 지역의 식물군락
암석	● 광물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자연산 고체
광물	● 일정한 화학조성과 매우 규칙적인 원자 배열을 가진 균질한 고체로써 대부분 무기적인 과정에 의하여 생성되며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천연보호구역	● 식물상·동물상·지질학적 또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기념물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보존 관리와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한 보호 지역

○ 문화재매매업

구 분	내 용
문화재매매업	●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문화재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

○ 전수교육관

구 분	내 용
전수교육관	●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및 단체의 전승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 다양한 전통공연과 전시, 체험 등 국민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설

○ 매장문화재

구 분	내 용
매장문화재	● 비지정문화재로서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된 문화재 ● 보통 발굴에 의해 드러남

○ 지표조사

구 분	내 용
지표조사	● 지표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정보를 통해 지하에 있는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조사행위 ● 지역 내의 유물의 유무, 분포, 성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땅 위에 드러난 유적·유물을 훼손하지 않고 조사·기록하는 조사

○ 발굴조사

구 분	내 용
발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조사행위</li><li>●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규정된 곳은 발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연구·유적 정비·멸실 및 훼손 우려 등의 상황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 가능</li></ul>

## 4. 일반 현황 용어

### ○ 대표자 유형

구 분	내 용
보유단체	● 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의의 단체 혹은 보유자가 속한 단체
보유단체 외 단체	●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없는 단체(ex, 일반예술단체)
공공단체(재단, 문화원 등)	● 국가 및 지자체 산하의 기관(단체)
개인 전승자	●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등 개인 명의의 대표인 경우
개인 전수자	● 전수교육을 받은 후 이수자격증을 받지 못한 사람이 대표인 경우

### ○ 조직형태

구 분	내 용
① 개인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 2인 이상이 공동 경영하는 사업체도 포함</li> <li>● <b>사업체 명칭만을 고려하여 회사법인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유의</b></li> <li>● 운영형태는 개인사업체와 같이 운영되어도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체가 개인사업체로 조사되지 않도록 유의</li> </ul>
② 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li> <li>-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구분</li> </ul> </li> <li>※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은 상법을 적용받으며 회사법인으로 구분</li> </ul>
③ 외국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li> <li>● 상법 제614조~제621조에 의거 외국회사의 국내 영업소, 지사, 지점 등 포함</li> </ul>
④ 사회복지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을 제외한 민법, 특별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그 연합체를 말함(그 법인이 설립한 사업체를 포함)</li> <li>【예시】 - 고아원, 양료원, 요양원, 장애인 위탁시설 등</li> </ul>
⑤ 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을 제외한 민법, 특별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활동의 범위 등이 정해진 형태의 법인(그 법인이 설립한 사업체를 포함)</li> <li>【예시】 - 종교법인, 학술재단, NGO 등</li> </ul>
⑥ 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을 제외한 민법, 특별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들이 결합하여 설립된 법인(그 법인이 설립한 사업체를 포함)</li> <li>【예시】 학술·종교·자선·기능·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li> <li>※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단법인은 민법을 적용받으며 회사이외법인으로 구분</li> </ul>
⑦ 학교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그 법인이 설립한 사업체를 포함)</li> <li>【예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등</li> </ul>

구 분	내 용
⑧ 비법인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단체 또는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격 없는 단체나 모임 등이 포함(문화단체, 후원회, 노동단체, 법인이 아닌 교회 등)</li> <li>- 단체의 성격이 같은 후원회, 종교기관이라 하더라도 법인등록여부에 의해 회사이외법인, 비법인단체로 구분됨</li> </ul> </li> </ul> <p>※ 법인격의 유무는 법인등기를 하였다면, 회사이외법인으로 판단</p>
⑨ 국가·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법인인 국가(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에 속한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영조물) 등으로서 그 구성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관·시설 등</li> <li>● 국·공립의 학교와 병원 등 공행정조직의 일부분으로서 특별한 공적목적에 계속적으로 봉사하기 위한 인적·물적 결합체인 공공시설(영조물 등)을 포함</li> </ul> <p>【예시】 국 가 : 기획재정부, 통계청,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 국세청, 부산대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도서관, 국립극장 등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립대학교, 부산시립박물관,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창원시립도서관 등</p>
⑩ 공공기관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함</li> <l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관공서는 물론 공기업·준정부 기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며, 좁은 의미로는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포함</li> </ul>

○ 문화재 관련 교육기관

구 분	내 용
문화재 관련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에서 지정한 공공교육기관 중 문화재 관련 교육커리큘럼(ex, 국악, 전통 음악, 전통무예, 고고학과, 민속학과, 문화재 보존·관련 학과 등)을 운영하는 교육기관</li> <li>● 문화재 보존·수리·관리를 위한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술학교 혹은 직업교육학교 등</li> <li>● 민간학원 중 문화재 관련 교육 커리큘럼(ex, 국악, 공예 등)을 운영하는 경우</li> </ul>

## 5. 인력 현황 용어

### ○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구분

구분	내용
①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로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도 자영업자에 포함</li> <li>※ 법인 사업체의 대표자는 자영업자가 아님</li> </ul>
② 상용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거나,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며 일정한 급여를 받는 종사자</li> <li>- 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li> <li>- 1년 이상 근무할 것으로 암묵적인 고용계약을 하고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사람</li> <li>* 1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근무하는 파견직 포함</li> <li>-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을 적용 받으며 상여금,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li> <li>- 사업체의 유급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은 포함</li> <li>- 법인사업체의 경우,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회사대표(사장, 대표이사 등)는 포함</li> </ul>
③ 임시 및 일용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일일단위(일당제)로 근무하는 종사자</li> <li>※ 특히 임시 및 일용종사자 수는 연인원으로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li> <li>- 고용계약은 명시적(explicit) 또는 암묵적(implicit) 계약을 모두 포함</li> <li>- 같은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처음부터 임시직으로 고용계약이 체결된 사람</li> <li>* 1년 미만의 계약기간으로 근무하는 파견직 포함</li> <li>- 매일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li> </ul>
④ 기타 (무급가족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 또는 기타 그 외 종사자</li> <li>● 무급가족 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무보수로 해당 사업체의 업무를 돕는 자로서 정규근무시간의 1/3이상을 근무하는 자</li> <li>※ 급여를 받으면 상용 또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 분류</li> </ul>

○ 문화재 관련 종사자

구 분	내 용
문화재 관련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문화재 종목 관련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자 등에 해당하는 종사자</li> <li>● 문화재 관련 자격·면허·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종사자</li> <li>● 문화재와 연관된 교육을 받거나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련 사업 활동 업무를 50% 이상 하는 종사자(ex, 업무지원, 교육 활동 보조 등)</li> <li>● 정기적으로 교육기관에 출근 및 직접적인 수당을 지급받으며 문화재와 연관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정교사(강사), 기간제 교사(강사), 외부 초빙 교사(강사) 등</li> </ul>

○ 종사상 유형별 문화재 관련 종사자

구 분	내 용
사무인력	● 문화재 관련 사업체(단체)의 총무, 인사, 경리 등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력
기획인력	● 문화재 관련 복원, 수리, 보존, 시설, 관리, 전시·관람·체험, 매매 등을 기획하는 업무를 하는 인력
전문(기술)인력	● 문화재 관련 복원, 수리, 보존 등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거나 전시·관리·체험 시설 및 프로그램 설치, 매매를 위한 감정, 연구개발 등 업무를 하는 인력
마케팅·홍보 인력	● 문화재 홍보 또는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 진행 시 마케팅 업무를 하는 인력
기타인력	● 그 외에 업무를 하는 인력

구 분	내 용
교사(강사 포함)	● 문화재 관련 정규교육 및 수리·발굴·활용·매매 등 교육을 하는 인력
행정인력	● 교육기관의 총무, 경리, 인사 등의 업무를 하는 인력
기술인력	● 문화재 관련 교육 진행 시 필요한 기자재 설치 및 관리 등 업무를 하는 인력
기타인력	● 그 외에 업무를 하는 인력(단, 교사(강사)가 아닌 원장은 행정인력에 포함)

## 6. 운영 현황 용어

### ○ 정부 지원금

구 분	내 용
정부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기초지자체에서 문화재 관련 사업 운영·관리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li> </ul>

### ○ 문화재 지원금

구 분	내 용
문화재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기초지자체에서 문화재 관련 사업 운영·관리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li> </ul>

### ○ 문화재 관련 외부위탁(외주) 비용

구 분	내 용
문화재 관련 외부위탁(외주)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관련 사업 활동 중 하도급(외부 위탁 용역 등)을 통해 사업 기획, 제작·수리, 인력 수급, 장비 임대 및 대여, 행사 진행 등을 모두 포함</li> <li>사업체 고정지출비(인건비, 일반 관리비)와 사업체 자체 소요 비용은 제외</li> </ul>